

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모임 지원사업 예산 기준

항 목	기 준	사용한도액	비고
강사비	[일반 III] 이하	[일반 III] - 1시간 이내: 100,000원 - 초과 매 시간당: 50,000원	- 강의시간은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- 사회적 관계망 모임 참여자에게는 강사료 지급 불가 - 강사이력서, 강의 계획서, 통장사본, 신분 증 사본 제출
식비	- 1인	8,000원	- 활동 사진, 활동보고서 - 식비 및 다과비는 전체 사업비 50% 이내
다과비	- 1인	4,000원	※ 예외: 모임의 목적에 따라서 교육재료 비로 인정 가능 ※ 비대면 시 사용 불가
재료비	- 재료비	실비	- 구입물품 사진
교육비	- 교육비	실비	- 사진첨부
체험비	- 체험비	실비	- 사진첨부
대여비	- 대여비	실비	- 대여물품 사진
대관비	- 대관비	실비	- 대관 장소 사진 - 이체 시: 사업자등록증, 계좌이체확인증 제 출
도서구입비	- 도서구입비	실비	- 구입도서 사진 - 전체 사업비의 10% 이내 ※ 예외: 독서모임 등 도서구입이 교육재료비 로 인정되는 경우
지원 불가 항목	공공요금	- 전기세,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 및 범칙금 등	
	통신요금	- 국내외 전화요금, 핸드폰요금 등 각종 통신요금	
	기자재 구입비	- 사회적 관계망 모임의 평상 시 활동 또는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의 구입비	
	경상 운영비	- 위 항목 이외에도 모임의 일반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 (사무실 운영경비, 급여 등)	